

덤핑의 判定基準에 관한 價格構造의 檢討

— 美國制度를 中心으로 —

李 春 三*

目 次

-
- | | |
|---------------------------|-------------------------------|
| I. 序 論 | 1. 比較對象價格의 決定 |
| II. 美國價格의 決定 및
調整方法 | 2. 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
輸出價格의 決定方法 |
| 1. 美國價格의 決定 | 3. 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
輸出價格의 調整方法 |
| 2. 工場渡價格으로의 轉換 | 4. 生產原價以下의 販賣에
대한 特例 |
| 3. 기타 調整項目 | IV. 構成價格의 適用 및 算定
方法 |
| 4. 輸出業者販賣價格에 대한
調整 | V. 結 論 |
| III. 外國市場價格의 決定 및
調整方法 | |
-

I. 序 論

덤핑(dumping)이란 國際市場間에 있어서의 價格差別이며 대체로 輸出國에 있어서의 國內價格보다 낮은 가격으로 外國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¹⁾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經濟的 意味로서의 덤픽일 뿐 여기에 法的制裁로서의 反dumping 關稅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픽에 의하여 輸入國內產業이 被害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하나의 要件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美國의 反dumping法에 있어서도 덤픽에 의거하여

* 清州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經濟學博士。

1) Viner, J.,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1923 reprinted, 1966), p.315; Barcel o', "Anti-dumping Laws as Barriers to Trade -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Anti-dumping Code", 57 *CORNELL L. Rev.* 491 (1972), p.494.

美國內 產業에 實質의인 被害가 發生하였다는 것을 要건으로 하고 있으며,²⁾ 또한 원칙적으로 輸出國의 國內市場價格과 輸出價格과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즉 덤핑 마진이 反덤핑 關稅로 부과되고 있다.

美國의 反덤핑法은 貿易去來上의 不公正한 價格差別을 排除하려는 것이지만 그 制定 당시부터 保護主義的 性格을 가진 데다가 國際競爭力이 未洽한 美國企業에 의하여 外國企業의 美國市場에 있어서의 離어의 증대를 牽制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

反덤핑 事件이 제기되면 당해 輸入品의 清算停止(suspension of liquidation), 推定反덤핑 關稅(estimated anti-dumping duty)의 징수 및 최종적으로 反덤핑 關稅가 輸入業者에게 과하여질 우려가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同節次의 係屬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外國의 輸出業者는 輸出減少가 부득이하다. 즉, 外國의 輸出業者는 적극적으로 對美輸出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輸入業者는 장래 反덤핑 關稅가 부과하여 진다는 것을 꺼리어 輸入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對美輸出은 감소하게 되고 효과적인 마케팅 플랜을 세우는 것도 역시 곤란하게 된다. 특히 美國에서 反덤핑 節次의 防禦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費用과 時間의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對美輸出에 종사하는 企業은 美國의 反덤핑法 및 실무에 대한 調查와 研究를 事前에 검토한 다음, 反덤핑에 말려들지 아니하도록 配慮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美國의 反덤핑法은 덤핑의 決定基準이 매우 복잡하고 不明確하다는 問題點을 갖고 있다. 덤핑의 決定基準에 대해서는 1984年 通商關稅法은 1921년 反덤핑法³⁾을 거의 그대로 踏襲한 1979年 通商協定法과 비

2) 實質의인 被害基準이 導入된 것은 1979年 通商協定法(the Trade Agreement Act of 1979, 이하 단순히 “協定法”이라 稱함)의 制定 이후부터이다. 1921年 反덤핑法下에서는 단순히 “被害”라고 되어 있었다.

3) 1921年 反덤핑法에서는 덤핑의 決定基準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즉, 하나는 反덤핑의 調査節次가 복잡하여 신속한 解決이 어려웠다는 점, 다른 하나는 1967年에 성립한 國際 反덤핑 協定(International Anti-dumping Code of 1967)과 矛盾이 되고 있었

교할 때 外國市場價格(Foreign Market Value: FMV)의 算出基準을 약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즉, 덤플인가의 여부는 두 개의 價格, 다시 말해서 前記의 外國市場價格과 美國에 대한 輸出價格(United States Price: USP)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外國市場價格은 원칙적으로 輸出國市場에 있어서의 價格(Home Market Price: HMP)을, 그리고 美國價格은 원칙적으로 購買價格(Purchase Price: PP)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조정을 가하여 工場渡價格(exfactory price)이 算出된다.

美國價格이 外國市場價格을 下廻하는 경우, 이를 公正價格以下(Less Than Fair Value: LTFV, 이하 “덤핑”이라고 略稱함)의 판매라고 하며 비로소 덤플을 肯定한다.

따라서 對美輸出에 종사하는 企業은 덤플 販賣에 관한 규정 및 實例를 기초로 하여 美國價格이 外國市場價格을 下廻하지 아니하도록 價格을 설정함으로써 美國과의 反dumping으로 因한 貿易摩擦을 事前에豫防하여야 한다.

그런데 反dumping 調査過程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상호 比較되는 이러한 價格을 어떻게 算定하는 것이냐의 問題이다.

價格의 算定에 있어서는 복잡한 개개의 貿易條件에 대한 特수성을 감안한 다음, 비교적 公平한 比較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美國의 反dumping法 및 그 施行規則은 이러한 價格算定法에 대하여 하나의 示唆點은 주고 있지만 一義的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裁量의 여지를 상당히 두고 있다.⁴⁾

調整畢輸出價格 또는 外國市場에 있어서의 價格을 算出하는 基本的

다는 점이다(Brace 1969, *op. cit.*, p.532 et seq; Jackson, J.,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 16.4 (1969), p.411 et seq 참조).

4) Treasury Runs the Maze, “Less Than Fair Value Determination Under the Antidumping Act of 1921”, 8 *GA. J. INT'L & COMP* (1978), pp.919-922; 1921年 反dumping 法制下에서의 덤플 價格의 決定에 대해서는 日本貿易振興會, “米國のアンチ・ダンピング法規の解説と運用の實際”, 1972, p.46 이하 참조.

인 規準은 基準價格에 일정한 調整을 거친 다음 工場渡價格을 산출하는 것이다.

調整畢輸出價格은 購買價格(purchase price) 또는 輸出業者販賣價格(exporter's sale price)으로써 反덤핑法은 이 兩價格을 포함하여 美國價格(United States Pri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輸出業者販賣價格은 美國에의 輸入이 輸出業者에 대한 現地의 子會社 등 輸出業者와 特別한 관係을 가짐으로써 행하여 지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基準價格은 購買價格에 있어서는 당해 輸入價格이며 輸出業者販賣價格에 있어서는 美國內에 있어서의 輸出業者와 特別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第3者에의 당해 물품에 대한 購買價格이다.

한편 外國市場에 있어서의 가격은 一次的으로는 당해 輸入品과 동일하거나 또는 類似한 물품에 대한 당해 製造業者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販賣價格[이를 國內市場價格(home market price)이라고 함] 그리고 二次的으로는 第3國에의 輸出價格[이를 第3國販賣價格(third country sales price)이라고 함], 또는 構成價格(constructed value)을 말하고 反덤핑法은 이러한 第3者를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를 外國市場價格(foreign market valu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의 주요 分析對象은 덤피ング 마진을 計算하기 위한 美國價格, 즉 輸出價格이 어떻게 선정되며 比較可能價格으로서 어떻게 調整되는가의 절차를 分析한다. 아울러 美國價格과의 比較對象이 되는 가격인 外國市場價格이 어떻게 算定되는가의 절차도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外國市場價格이라는 용어는 美國을 기준으로 定義되는 것이기 때문에 美國을 제외한 모든 國家가 外國에 해당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國內市場價格이 곧 外國市場價格에 포함된다는 점에 혼동이 없어야 하겠다.

II. 美國價格의 決定 및 調整方法

1. 美國價格의 選定

美國價格, 즉 輸出價格이란 덤픽의 調査對象이 되는 물품이 輸出業者와 관연이 없는 최초의 美國 輸入業者에게 販賣된 價格을 말한다.

만일 輸出業者가 傍系 혹은 다른 形태로 관연을 맺고 있는 販賣業者(related distributor)를 美國 내에 갖고 있지 않으며 輸出業者가 직접 美國의 輸入業者에게 물품을 販賣한 경우에는 동 關聯販賣業者가 美國內의 일반 輸入業者에게 販賣한 價格이 곧 輸出價格으로서 美國價格이 된다.

특히 後者의 경우에는 가끔 關聯會社間의 去來價格은公正한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反dumping法의 목적은 關聯會社間의 僞裝과 價格決定方法이 어떠하든 간에 被害를 惹起시킬 가능성이 있는 差別的 價格의 설정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설정된 것이다.⁵⁾

輸出業者販賣價格(exports' sales price)에 있어서의 “輸出業者”라 함은 당해 물품을 스스로 또는 자기의 計定에서 美國에 輸入하는 다음과 같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定義되고 있다.

즉, ① 輸出業者, 製造業者 또는 生產者와의 사이에 代理關係를 가지는 자. ② 直接 또는 間接을 불문하고 株式의 所有, 支配 기타 방법에 의하여 輸出業者, 外國製造業者 또는 生產者의 업무에 利害關係를 가지는 자. ③ 直接 또는 間接을 불문하고 輸出業者, 外國製造業者 또는 生產者가 株式의 所有, 支配 기타 방법에 의하여 特定人の 업무에 利害關係를 가지는 때의 그 자 및 ④ 共同 또는 單獨(jointly or severally)이거나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특정인과 輸出業者, 外國

5) Victor, "United States Anti-dumping Rules", 10 ST. MARY'S L.J. 217, 1977, pp.217-223.

製造業者 또는 生產者와의 사이에 株式의 所有, 支配 기타 方法으로 合計 20% 이상의 投票權 또는 支配權을 갖거나 갖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 등을 말한다.⁶⁾

美國價格으로서 購買價格과 輸出業者販賣價格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그 까닭은 價格調整의 超算點이다를 뿐만 아니라 購買價格인가 輸出業者販賣價格인가에 따라 그 調整項目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세한 調整事項에 대해서는 後述하는 바와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輸出業者販賣價格의 경우에는 美國에서 발생한 間接販賣費用(indirect selling expense)까지도 조정이 된다는 점이다.

購買價格과 輸出業者販賣價格의 정의에 대하여 反dumping 規程 第353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① 購買價格이란 당해 물품이 美國으로 輸入되기 위하여 同物品의 製造業者와 美國의 輸入業者間에 通關以前에 販賣規約이 체결된 경우, 同販賣規約上의 가격을 말하고,⁷⁾ ② 輸出業者販賣價格이란 당해 물품이 通關以後에 美國에서 販賣된 가격을 말한다.⁸⁾

실제로 商務省에서 送付되어 온 質問書上⁹⁾의 구분을 중심으로 實務上에서의 購買價格과 輸出業者販賣價格과의 구분을 살펴보면 “美國內의 최초의 獨립된 輸入業者에게의 販賣가 물품의 美國通關 이전에 이루어 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販賣時點은 販賣契約의 성립에 의하여 販賣數量과 가격이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販賣가 通關보다 먼저 이루어 졌으면 購買價格이 채택되고 販賣가 通關後에 이루어 졌으면 輸出業者販賣價格이 채택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輸出國의 製造業者는 購買價格에 해당되는

6) § 771 (13) (A)~(D).

7) § 772 (b).

8) § 772 (c).

9) Federal Register Vol. 45, No. 26, (wednesday, February 6, 1980), *Rules and Regulations*, “Anti-dumping Request for Information” 참조.

販賣와 輸出業者販賣價格에 해당하는 販賣를 모두 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美國의 商務省은 일반적으로 전체 美國販賣의 85% 이상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購買價格 또는 輸出業者販賣價格 중 어느 거래형태가 전체 미국판매의 85%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한, 실제 反덤핑 조사에서는 兩價格의 판매가 모두 포함되게 된다.¹⁰⁾ 따라서 이러한 경우 輸出業者는 購買價格에 해당하는 판매와 輸出業者販賣價格에 해당하는 판매를 별도로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賢明하다.

2. 工場渡價格으로의 轉換

價格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부터 해당물품을 美國市場으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控除하게 된다. 이러한 控除는 購買價格 또는 輸出業者販賣價格의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비용들이 輸出價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은 物品運送에 관련된 비용의 例를 들면, i) 國內運送費用(inland freight),¹¹⁾ ii) 海上運送料(ocean freight), iii) 海上保險料(marine insurance), iv) 輸入關稅(U.S. import duties),¹²⁾ v) 輸出稅(foreign export duties),¹³⁾ vi) 仲介料(brokerage fee), vii) 輸出促進費(export promotion fee),¹⁴⁾ viii) 기타 費用¹⁵⁾ 등이 이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價格調整은 輸出價格과 外國市場價格의 비교를 工場渡價格으로 還元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

10) 1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하 단순히 “C.F.R.”이라고 稱함).

11) 이는 被提訴社의 生產工場으로부터 輸出港까지의 運送費用을 말한다.

12) 이는 당해 물품의 輸入에 대하여 美國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13) 이는 例컨대 당해물품의 輸出에 대하여 輸出國에서 부과하는 關稅를 말한다. 輸出國에서 輸出稅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 및 물품은 브라질의 코피, 말레이지아의 고무 등 극히例外的이다.

14) 이는 運送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輸出促進費用을 말한다.

15) 이는 物品을 美國까지 運送하기 위하여 발생된 諸費用을 말한다.

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外國市場價格과의 적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購買價格이나 輸出業者販賣價格 두 경우 모두에 공통적으로 加算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비용들도 있음을 留意하여야 한다. 즉, 輸出價格인 美國價格에 加算되어야 할 비용으로서는¹⁶⁾ 첫째, 包裝費用(packing cost)을 들 수 있다. 包裝費用이 발생하였으나 물품의 輸出價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包裝費用은 輸出價格에 加算하여야 한다. 包裝費用을 加算하는 근거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外國市場價格의 計算時, 輸出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包裝費用을 外國市場價格에 加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價格에도 包裝價格을 加算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이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輸出價格에 包裝費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調整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同費用을 加算하여야만公正한 價格比較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補助를 받은 물품이 輸出되어 輸入國內의 산업에 被害를 야기시키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른 바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ies)를 납부한 경우, 同相計關稅金額은 輸出價格에 加算된다.¹⁷⁾ 즉, 相計關稅는 輸出國政府로부터 받은 補助金(subsidy)에 대한 혜택을 相計하기 위한 것으로서 同補助金은 輸出國 内需販賣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調整을 통하여 内需價格과 輸出價格의 적정한 비교를 꾀하기 위해서이다.¹⁸⁾ 이 경우에도 물론 相計關稅가 조사대상 물품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3. 기타 調整項目

이상에서 설명한 調整事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追加로

16) § 772 (d) (1), 19 C.F.R. § 353 (d) (1).

17) § 772 (d) (D), 19 C.F.R. § 353.10 (d) (1) (iv).

18) 日本通商産業省, “アメリカ・EC通商關係法必携”,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85, p.228.

調整된다. 여기서 설명되는 사항들은 주로 美國內에서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前記의 諸費用들과 마찬가지로 調整對象物品과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함을 留意하여야 한다.¹⁹⁾

첫째, 購買價格이 적용되는 경우에 美國으로의 輸出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諸割引(discounts or rebates)은 輸出價格에서 差減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 그러한 割引이 輸出價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즉, 割引을 반영한 후의 純價格으로 調整하여 外國市場價格과 비교되는 것이다.

한편 輸出業者販賣價格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美國內의 關聯販賣會社가 그의 顧客에 대한 販賣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早期代金支給割引, 地域的 割引 등의 비용이 輸出價格에서 差減된다.

둘째, 美國內에서 발생하는 販賣關聯 運送費用도 마찬가지로 販賣價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輸出價格에서 控除된다. 그러나 購買價格이 적용되는 경우일 때에는 美國內의 運送費用이 輸出價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國의 輸入業者가 그의 顧客에게 販賣하는데 소요되는 運送費用이 輸出業者와는 커다란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輸出業者販賣價格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美國內의 關聯販賣會社가 부담하는 美國內 運送費用은 販賣價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美國內 運送費用이 差減된다.

셋째, 이상에서 설명된 비용들이 調整項目의 전부는 아니며 被提訴會社의 特수한 販賣方法 또는 特수한 狀況에 따라 기타의 비용들이 調整項目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비용의 基準은 劃一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으나 調查對象物品의 販賣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따라서 기타의 비용이 이러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 § 772 (e), 19 C.F.R. § 353. 10 (e).

4. 輸出業者販賣價格에 대한 調整

美國內의 販賣子會社 등 관계회사에 판매되는 경우에는公正한去來에 의한 가격은 이 關聯會社가 美國內에서 관계를 갖지 아니하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비로소 設定된다. 따라서 이러한 美國內에서의販賣價格을 基準價格으로 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調整을 하여 工場渡價格을 算出한다.²⁰⁾

첫째, 輸出業者販賣價格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美國內에서 調整對象物品을 판매하는데 발생된 代行手數料는 輸出業者販賣價格에서 差減된다.

둘째, 美國內의 關聯 販賣會社의 物品販賣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輸出業者販賣價格에서 差減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물론 輸出業者販賣價格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즉, 이 경우 差減되는 비용은 被提訴會社의 美國內의 支社 또는 現地法人에서 발생되는 모든 直接販賣費用과 間接販賣費用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間接販賣費用은 일반적으로 製品價格을 구성하는 모든 費用, 즉 一般管理費 및 諸般 營業費用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경우는 直接販賣費用뿐만 아니라 製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間接販賣費用까지도 輸出業者販賣價格에서 控除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外國市場價格에 대한 調整時 間接販賣費用金額의 결정은 輸出業者販賣價格에서의 間接販賣費用調整金額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셋째, 物品의 輸入後 그리고 販賣後에 美國內에서 추가로 발생된 製造活動에 의한 增加價值는 輸出價格에서 差減되는데 이것도 역시 輸出業者販賣價格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追加製造費用이 발생한 경우는 1974年 이전까지는 反dumping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1974年 通商法(the Trade Act of 1974)제정시 포함되었고 그 후 1979年에 수정이 가해져 上記 增加價額은 輸出業者販賣價格에서 현재

20) § 772 (c), (e), 19 C.F.R. (e).

控除하도록 되어 있다.

III. 外國市場價格의 決定 및 調整方法

1. 比較對象價格의 選定

後述한 방법에 의거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美國에의 調整畢輸出價格인 美國價格을 결정한 다음에는 이것과 비교하여 公正價格 이후의 販賣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外國市場價格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外國市場價格의 算出方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算出, 특히 販賣事情 및 물품의 差異에 관한 調整²¹⁾은 反덤핑 節次에서 商務省과 外國製造業者, 輸出業者 및 輸入業者와의 사이에 자주 意見對立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당해 덤프ing事件의 결과를 左右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²²⁾

外國市場價格은 輸出國에 있어서의 國內市場價格(home market price), 美國 이외의 第3國에의 輸出價格(third country sales price) 및 構成價格(constructed pric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反dumping法은 外國市場價格에 대해서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비교적 상세히 정의하고 있지만 “公正價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明白한 概念規定이 없다. 그러나前述한 立法史와 施行規則을 보면公正價格이란 反dumping 關聯計算의 기초인 外國市場價格의 概算(estimate)을 의미하며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國市場價格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公正價格算出에 적용되며 특히 公正價格이라고 할 때에는 外國市場價格을 指稱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²³⁾

外國市場價格 중 輸出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販賣價格의 算出에 있

21) 後述하는 第3節 참조.

22) 日本貿易振興會, “1921年アンチ・ダンピング法の運用上の諸問題”, 『美國會計檢查院報告』, 1979, pp.33-34.

23) 19 C.F.R. § 353. 1.

어서는 美國 이외의 시장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販賣價格에 일정한 調整이 행하여진다.

反dumping의 調查過程에서는 일차적으로 輸出國內市場價格을 결정하고 이를 輸出價格인 美國價格과 비교하지만, 輸出國에 있어서의 國內販賣가 없거나 소량이기 때문에 비교의 기초로 삼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3國販賣價格을 사용한다.²⁴⁾

이 경우에도 商務省은 第3國販賣價格을 사용함이 없어 構成價格을 사용할 수도 있다.²⁵⁾

1921年の 反dumping法에 있어서는 第3國販賣價格이 外國市場價格을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로소 第3의 기준으로서 構成價格²⁶⁾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은 1979년 通商協定法(the Trade Agreement Act of 1979)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價格對比의 順位가 없어졌다. 따라서 兩者 가운데 어떤 가격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商務省의 전적인 裁量에 속하나 대체로 第3國에서의 販賣에 관한 충분한 情報가 있고 調査期間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第3國販賣價格이 優先基準이 될 것이다.²⁷⁾

構成價格은 製造 코스트에 의하여 算出되는 것이기 때문에 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販賣價格과는 달리 調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한편 生產原價(cost of production) 이하의 가격으로 販賣된 거래나 國家統制經濟國으로부터의 輸入과 多國籍企業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는 特別規定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에서²⁸⁾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2. 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輸出價格의 決定方法

이 방법은 輸出國(國內市場價格) 또는 第3國(第3國販賣價格)에 있어

24) § 773 (a) (1) (A), (B).

25) § 773 (a) (2).

26) 後述하는 “構成價格의 적용 및 算定方法”에 관한 第4節 참조.

27) 19 C.F.R. § 353. 4. (b).

28) 後述하는 第4節 참조.

서의 당해 物品과 同一하거나 또는 類似한 물품에 대한 實제의 販賣價格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에 일정한 조정을 가하여 工場渡價格을 算出함으로써 결정되는 방법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國內市場價格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第3國販賣價格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販賣量이 輸出價格인 美國價格과 비교하여 國內市場價格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販賣量이 충분한가의 여부는 美國 이외의 國家에 輸出되고 있는 販賣量과의 관계에서 판단된다.

反덤핑 規則에 의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第3國으로 販賣되는 量의 5% 미만인 때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⁹⁾

구체적으로 國內市場價格은 당해 물품의 美國에 대한 輸出時期에, 輸出國의 主要市場에서 同一하거나 또는 類似한 物品(such or similar merchandise)이 일반적인 都賣數量(usual wholesale quantities)으로서 또는 일반적인 去來過程에서(ordinary course of trade), 國內消費를 위하여 판매되거나 판매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販賣申請이 행하여 진(sold or in the absense of sales, offered for sale) 때의 價格을 기준으로 하고,³⁰⁾ 반면 第3國販賣價格은 美國에 대한 輸出時期에 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이 美國 이외의 國가로 판매되거나 또는 販賣申請이 행하여 진 그때의 가격을 基準價格으로 算出한다.³¹⁾ 따라서 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販賣價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의 意義 및 範圍를 규명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外國市場價格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販賣價格 또는 그 價格이 다양한 경우에는 標本抽出 및 平均(sampling and averaging) 技法에 의한 가격이 算定되어야 한다.

여기서 同一 또는 類似한 物品이라 함은 一次的으로는 당해 調査의

29) 19 C.F.R. § 353. 4 (a).

30) 19 C.F.R. § 353. 3 (a).

31) 19 C.F.R. § 353. 5 (a).

대상이 되고 있는 물품 및 그 물품과 物理的 特徵에서 同一하고 또한同一한 國家에서同一한 자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³²⁾

外國市場價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販賣價格 또는 第3國에 대한 販賣價格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適用順位가 결정된다.

첫째, 당해 물품의 優勢한 價格(the price of a preponderance of the merchandise)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調查期間 중에³³⁾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또는 第3國에 대한 모든 販賣의 80% 이상이 동일한 가격으로 행하여져야 한다.³⁴⁾

둘째, 價格이 다양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調查期間 중의 標本抽出 및 平均技法에 의한 가격이 사용된다.³⁵⁾

셋째, 위의 두 價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商務省은 기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方法에 의하여 價格을 결정할 수 있다³⁶⁾고 되어 있다.

특히 上記 두번째의 경우에는 1979年 通商協定法下에 있어서는 加重平均價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4년 通商關稅法은 第620條에 의거 이를 改正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標本抽出 및 平均技法을 사용할 수 있도록 外國市場價格算出基準을 변경하였다. 더욱이 本例는 販賣量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同技法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종래에는 通常의으로 外國市場價格을加重平均으로 계산한 다음 이와 각각의 美國內 販賣價格을 비교하여 각기 다른 美國販賣價格 가운데 外國市場價格보다 낮은 것이 있으면 덤평으로 결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덤평이 아닌 것으로 결정해 왔었

32) § 771 (10).

33) 通商調查를 받고 있는 外國의 製造業者, 生產業者, 輸出業者에게 請願이受理可能한 형태로 受領한 날이 속하는 月의 初日로부터 150日 이전과 30日 이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9 C.F.R. § 353. 38 (a)).

34) 19 C.F.R. § 353. 20 (b).

35) § 777 A (a) (b).

36) 19 C.F.R. § 353. 20 (c).

37) § 777 A (a) (1).

다.³⁸⁾ 그 결과 美國內 平均販賣價格이 外國市場에서의 平均價格보다 높다 하더라도 美國內 個別販賣價格을 근거로 덤픽 결정이 내려 질 수 있었다.

또한 外國市場價格의 算出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이 美國에 輸出된 時點에서의 輸出國內販賣價格 대신에 同輸入品이 美國內에서 販賣되는 시점의 輸出國內 販賣價格을 기준으로 하도록 1984년 通商關稅法 第615條에 의거 改正 됨으로써³⁹⁾ 앞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對美輸出國들의 일부 美國內 販賣價格이 外國市場에서 平均價格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관한 한 덤픽으로 인한 輸入規制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評價할 수 있다. 더욱이 덤픽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그 마진 率이 낮아짐으로써 부과될 反dumping 關稅도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外國市場價格의 확정에 있어서는 허위의 판매 또는 판매신청 및 架空市場의 설정에 의한 販賣 또는 販賣申請은 無視된다.⁴⁰⁾

또한 販賣申請은 판매가 없는 때에 한하여 고려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承諾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申請으로 보지 아니한다.⁴¹⁾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판매 또는 第3國에 대한 판매가 각각 美國價格과의 비교에서 기초가 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 규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⁴²⁾

美國價格과 輸出國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價格 또는 第3國에 대한 價格과의 비교는 동일한 水準의 거래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비교하는데 충분한 數의 同一去來에 대한 水準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販賣 또는 第3國에 대한 販賣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가장 근접한 去

38) 19 C.F.R. § 353. 20 (a).

39) § 773 (a) (1).

40) § 773 (a), 19 C.F.R. § 353. 18.

41) 19 C.F.R. § 353. 17.

42) 19 C.F.R. § 353. 3 (b). 다만 購買者에 대한 物品의 價格에 영향을 미칠 規制에 대하여서는 第3國價格에 대한 적절한 價格調整이 행하여 진다(19 C.F.R. § 353. 5 (b)).

來水準의 판매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⁴³⁾

또한同一 또는類似한 물품이賣渡人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販賣代理店 기타의機關(sales agency or other organization)을 통하여販賣되거나販賣의申請이행하여진 경우에는 이販賣代理店 기타의機關에의한販賣 또는販賣申請에 있어서의 가격을外國市場價格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⁴⁴⁾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또는第3國에 대한販賣나申請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자(related persons)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販賣 또는申請에 있어서의 가격은外國市場價格의 결정에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調查의 대상이 되는美國에의輸入이 원산국으로부터 직접輸入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國家(船積國)에서換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換積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原產國에 있어서의同一 또는類似한 물품의販賣價格을 기초로 하여外國市場價格이 결정된다.⁴⁵⁾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基準價格에,美國을향한船舶에 선적할 것을 가정하고, 이를 위하여 포장한 상태에 두는 데에 요하는容器,包裝 그리고 기타 일체의費用 및經費(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and all other cost, charges and expenses) 등을附加한다.⁴⁶⁾ 그렇게 함으로써國內市場에 있어서包裝費用을美國을향한包裝費用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調整된 가격이國內市場價格 또는第3國販賣價格이며 이것이곧工場渡價格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第3國販賣價格의算出과國內市場價格의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兩者의相異點은第3國販賣價格에 있어서는基準價格으로서

43) 19 C.F.R. § 353. 19.

44) § 773 (a) (3), 19 C.F.R. § 353. 22 (b).

45) 19 C.F.R. § 353. 21.

46) 19 C.F.R. § 353. 5 (a).

美國 이외의 國家로의 輸出價格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第3國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합치하고 원칙적으로 이 順序에 의하여 선정되는 單一國을 의미한다.⁴⁷⁾

첫째, 美國을 향하여 輸出되는 물품과의 類似性의 정도가 다른 국가 보다 높을 것(다만 이러한 國家에의 販賣數量이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

둘째, 販賣量이 國內市場 및 美國 이외의 어떠한 國家를 향하는 販賣量보다 많을 것.

셋째, 시장의 組識化 및 發展의 정도가 美國市場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장 類似할 것.

第3國은 單一國家인 것이 원칙이지만前述의 基準과 順位에 의하여 선정되는 國家를 향한 販賣가 美國價格과 비교하는데 충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前述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는 複數의 國家를 향한 販賣를 合算할 수도 있다.⁴⁸⁾

3. 國內市場價格 및 第3國輸出價格의 調整方法

前述한 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國內市場價格 또는 第3國販賣價格은 각각 輸出國內市場에 있어서의 또는 제3국을 향한 실제의 販賣價格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工場渡價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公正價格 이하의 販賣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美國價格과 비교하는 데는 아직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에 당해 調查對象이 되고 있는 美國에의 輸入과의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한 調整을 기할 필요가 있다.

反dumping法은 제773조 (a)항 (4)절에서 販賣數量에 있어서의 差異, 販賣事情의 差異 및 製品 그 자체의 差異 등에 의한 調整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에 의한 調整을 함께 있어서는 이와 같은 차이

47) 19 C.F.R. § 353. 5 (c).

48) 19 C.F.R. § 353. 5 (d).

가 美國價格과 外國市場價格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⁴⁹⁾

또한 調整을 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는 價格 또는 價格과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아니하는 調整은 無視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그 기준으로서는 일반적으로 0.33% 이하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가지는個別的調整 또는 1.0% 이하의 그것을 가지는 調整群(販賣數量, 販賣事情, 物品의 物理的 特徵 및 去來水準의 差異에 의하여 구성된)인가의 여부이다.⁵⁰⁾

外國市場價格의 결정에 있어서 販賣數量 또는 調整의 수가 극히 많은 경우에는 標本抽出 및 平均技法을 사용한다 함은前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外國市場價格의 算定에 있어서 어떠한 항목을 調整하고 어떠한 여건을 고려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1) 販賣數量의 差異에 대한 調整

덤핑 販賣의 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동일한 數量의 販賣에 불여진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販賣數量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대하여 調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調整되는 價格差는 일반적인 去來過程에서 발생하는 것 이거나 그 割引이 당해물품의 數量에 의한 製品原價의 차이에 특정적으로 彙屬(specifically attributable)되는 것이어야 한다.⁵¹⁾

後者の 경우, 前提條件으로서 구체적으로는 調査期間 중 또는 關係當局에서 승인한 다른 代表的 期間 중(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國內市場에서나 第3國에 대하여 일반적인 거래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販賣의 20% 이상에 대하여 적어도 동일한 정도의 數量割引이 행하여진 경우, 이 할인가격이 外國市場 價格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49) § 773 (a) (4), 19 C.F.R. § 353. 13.

50) 19 C.F.R. § 353. 23 (a).

51) 19 C.F.R. § 353. 14.

된다.⁵²⁾

위의 요건을 充足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割引價格은 무시되는 것 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격과 함께 標本抽出 및 平均技法을 算定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割引이 행하여 졌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價格表의 존재는 결정적이 아니며, 輸出業者는 이 價格表가 당해 去來分野 및 市場에서 적용되어 온 것을 立證만 하면 된다.⁵³⁾

한편 數量割引이 아닌 기타의 割引(other discount and rebates), 즉 地域的 割引, 早期支給割引 등은 그것이 控除項目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販賣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둘째 그러한 割引이 利害關係가 없는 一般購買者에게 실제로 제공되었어야 하고, 셋째 割引의 조건이 購買時點에서 결정되거나 정해질 수 있어야만 한다.⁵⁴⁾

위와 같은 條件을 充足시키는 기타의 割引은 國內市場價格에서 控除되게 된다. 그런데 數量割引이 인정될 경우에는 全販賣價格이 調整되는 것에 反하여 기타의 割引은 該當販賣에 대해서만 調整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割引이 존재할 때, 각 割引을 該當去來에서 控除하게 되면 全體販賣者에 대한 가격은 여러 가지 종류의 割引價格의 總平均價格이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製品의 공정한 가격은 割引과 같은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購買者에 대한 購買價格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美國의 提訴者에 의해 주장되어 온 바이지만 이에 대하여 商務省의 一貫된 政策決定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割引에 대한 控除與否에 관한 立證責任은 被提訴者側에 있다.

(2) 販賣環境의 差異에 대한 調整

販賣環境의 差異(differences in circumstances of sales)에 대한 調

52) 19 C.F.R. § 353. 14 (b) (1) (3), § 353. 20, § 353. 38.

53) 19 C.F.R. § 353. 14 (c).

54) 19 C.F.R. § 353. 23 (b).

整은 美國市場에서의 販賣와 輸出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販賣間의 販賣方法, 節次 및 條件에 따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公正한 販賣比較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⁵⁵⁾

이와 같은 販賣環境의 차이에 대한 調整項目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費用調整項目들이 關聯販賣와 직접 關聯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⁵⁶⁾

따라서 販賣前 發生費用, 賃借料나 實驗研究 등의 일반적인 間接經費 등 특정의 販賣와 直接的인 관련이 없는 諸費用은 인정되지 않는다.⁵⁷⁾

이러한 규정은 販賣環境의 차이에 따른 調整의 限界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러한 費用이 어느 特定의 販賣와 連結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調査對象 同種物品의 販賣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論難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個別狀況에 따라서 費用別로 商務省의 입장은 綜合, 檢討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基準으로서는 調整되는 費用項目들이 關聯製品의 販賣價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反壟斷 規制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調整事項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融費用(credit expense)에 대한 調整은 販賣關聯費用으로서의 金融費用의 差異에 한정하게 된다.⁵⁸⁾

販賣와 관련된 金融費用은 주로 購買者에게 信用販賣(credit sales)에 의하여 물품을 販賣함으로써 代金回收期間동안 會社가 부담하게 되는 利子費用 등을 일컫는 것이다. 즉, 美國에 대한 輸出은 信用狀(L/C) 條件으로 하고 國內販賣는 외상으로 이루어 졌다면 외상기간에 대한 金融費用을 內需市場價格에서 控除할 수 있다는 것이다.

55) 日本通商產業省, 前掲書, p.229.

56) 19 C.F.R. § 353. 15 (a).

57) Dickey, "A Guide for Pricing Commodities to Enter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11 Law & POL'Y INT'L Bus 491, 1979, p.479.

58) 19 C.F.R. § 353. 15 (b).

종래 反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준을 살펴보면 信用期間에 관계없이 金融費用의 調整은 會社의 實제로 발생된 短期利子費用을 초과해서 控除될 수 없었다. 그러나 短期借入金과 관련된 利子費用만을 控除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獨斷的이며 나아가서 國際商慣習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후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여 實제 발생된 모든 金融費用을 調整해 주는 방향으로改正하였다.⁵⁹⁾

그리하여 金融費用의 控除는 短期借入金에 대한 利子費用의 上限線과 관계없이 該當企業의 實제 販賣額과 借入金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따라서 實제의 金融費用에 관한 調整의 예를 試算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질 것이다.

- i) 信用販賣額(X)의 計算
- ii) 平均 信用期間(Y)의 計算
- iii) 適用될 利子率(Z)의 計算
- iv) 調整金額試算 : $X \times \frac{Y}{365} \times Z$

즉, 實제의 販賣狀況으로부터 (X)와 (Y)를 파악하고 實제의 借入金現況으로부터 (Z)를 파악하여 調整될 金融費用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外상판매에 따른 不足資金의 조달을 위한 借入이 立證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利子率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短期借入金, 즉 營業資金調達을 위한 借入金 利子率만을 적용시켜야만 할 것이다.

둘째, 國內販賣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販賣手數料는 內需市場價格에서 控除될 수 있다.⁶⁰⁾ 그러나 關係會社 등에 지급된 手數料는 단순한 資金의 代替로 간주되어 控除項目에서 제외된다. 다만 會社의 職員에게 지급된 販賣手數料는 會社의 資金이 외부로 流出된 것으로 인정되

59) 19 C.F.R. § 353. 15 (b).

60) 19 C.F.R. § 353. 15 (b).

기 때문에 控除項目에 포함된다.⁶¹⁾ 이러한 판단은 販賣手數料의 受惠者가 누구인가에 左右한다. 한 가지 特記할 사항은 固定費인 販賣員의 給料가 控除對象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會社의 販賣組織이 販賣員別로 제품이 割當되어 있는 경우에는 調查對象物品을 담당하는 販賣員의 給料는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控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廣告費(advertising expense)도 調査對象物品과 直接關聯이 되는 경우 控除對象項目이 될 수 있다.⁶²⁾ 이 경우 廣告費의 지출로서 혜택을 받는 물품이 어떤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말하자면 어떠한 廣告가 調査對象物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물품 혹은 企業全般에 대한 廣告일 경우에는 配分의 문제가 따르게 되며 이때에도 합리적인 配分根據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費用의 控除가 부인될 가능성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輸入關稅(import duties), 즉 輸出國의 製造業者가 외국으로부터 原材料나 部品을 輸入할 때 부과되는 關稅는 당해물품이 美國으로 輸出될 때 還給되거나 혹은 그러한 輸入이 輸出을前提條件으로 事前免稅되는 경우에는 同該當關稅가 國內市場價格에서 差減된다.⁶³⁾

즉, 그러한 關稅는 關聯物品이 內需販賣되는 경우에는 該當企業이 그대로 부담하게 되게 때문에公正한 價格比較를 위해서는 調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關稅還給이나 또는 事前免稅된 輸入關稅가 調整項目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 關稅還給이나 免稅받은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ii) 그것이 또한 輸出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iii) 關稅가 納付된 물품이 輸出物品의 生產에 사용되었을 것⁶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예는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制나 이와 유사한 沖退

61) 高田昇治, アメリカ通商法の展開, 東京布井出版株式會社, 1982, p.155.

62) 19 C.F.R. § 353. 15 (b).

63) 19 C.F.R. § 353. (d) (1).

64) 19 C.F.R. § 353. 6 (a) (1).

稅制度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 및 臺灣이 대표적인 國家에 속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租稅收入의 증대를 위하여 間接稅制度를 採擇하고 있는데, 輸出의 경우에는 물품의 消費가 당해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間接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輸出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거나 還給되는 間接稅 등은 國內市場價格에서 差減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된 輸入關稅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調整이 없다면, 단순히 間接稅制度 때문에 덤픽 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間接稅金額이 國內販賣價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⁶⁵⁾

實務上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間接稅가 價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假定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被提訴者側에게 이의 證明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勘案하여 價格算定의 근거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品質保證費用(warranty expense), 즉 修理費나 部品 또는 물품을 交換하여 줌으로써 발생하는 諸費用은 調查對象物品의 거래에 대한 費用이라면 그것이 調查期間中에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控除된다. 이러한 費用은 물품의 販賣에 직접 관련되어 附隨的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며 또한 물품의 價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品質保證費用의 金額은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推定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도 會社는 그러한 費用支出이 특정의 物品販賣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立證하여야 한다.⁶⁶⁾ 또한 美國市場에서와 國內需市場에서의 각 品質保證費用의 支出實績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國內需市場에서는 많은 費用이 발생하였으나 美國에서 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立證이 이루어지

65) 19 C.F.R. § 353. 15 (a).

66) Dicky, *op. cit.*, pp.497-498.

지 않는 한, 費用全體가 부인될 可能性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곱째, 技術援助(technical assistance)는 당해 물품에 관한 것, 즉 당해 물품의 이용에 관하여 技術的인 協助를 하는 데 따르는 費用에 局限되기 때문에⁶⁷⁾ 研究開發費와 관련하여 발생한 費用은 控除對象이 아니다.

여덟째, 앞에서 설명한 諸費用들은 直接販賣費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예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間接販賣費用이 控除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밝혀 보기로 한다.

대체로 間接販賣費用은 販賣部署의 일반적인 管理費用 등으로써 特定物品의 販賣行爲와 直接的으로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調查項目의 適正性 判斷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만 판매와 관련하여 間接的으로 발생된 費用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間接販賣費用은 輸出價格이 購買價格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控除받지 못하지만 만일 輸出業者販賣價格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輸出業者販賣價格의 單位當 價格에서 공제되는 間接販賣費用을 한도로 하여 單位當 內需市場價格에서 控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⁶⁸⁾

(3) 物理的 特性의 差異에 대한 調整

同一한 物品(identical merchandise)이 美國 및 內需市場 양쪽에 모두 販賣된 경우에는 똑같은 물품이 서로 比較되기 때문에 물품의 物理的인 特性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모두 販賣된 物品中에同一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美國에 販賣된 물품과 가장 類似한 물품(similar merchandise)과를 서로 비교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두 物品間의 物理的 特性의 差異(differences in physical characteristics)에 대한 調整이 필요하게 된다.⁶⁹⁾

이러한 物理的 特性의 차이에 대한 調整을 하기 위해서는 美國에

67) 19 C.F.R. § 353. 15 (b).

68) 19 C.F.R. § 353. 15 (b).

69) 773 (a) (4) (c), 19 C.F.R. § 353. 16.

販賣된 물품과 國內市場 販賣物品間의 物理的 差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物理的 差異의 金額은 材料費, 勞務費 및 製造經費를 포함하는 製造原價의 差異로 파악되고 있다.⁷⁰⁾ 즉, 美國에 판매된 물품에만 사용된 部品에 해당하는 製造原價와 國내에 販賣된 물품에만 사용된 部品에 해당하는 製造原價間의 差異를 調整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部品들의 市價의 差異가 이용되기도 한다. 製造原價의 차이를 調整項目으로 提示할 경우에는 그러한 製造原價의 차이가 物理的 差異에 直接的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立證하여야만 된다. 물론 이 경우 立證責任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⁷¹⁾

그런데 立證을 위하여서는 證據書類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자료에 해한 秘密維持의 관계상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製造費에 대한 資料는 대부분의 경우, 製造業者의 秘密에 속하고 따라서 製造業者는 이의 開示를 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秘密資料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反덤핑 節次의 申請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⁷²⁾

資料에 대한 秘密維持의 문제는 製造費에 限하지 아니하고 價格割引이나 기타의 去來條件에 공통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秘密維持의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秘密資料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記述한 秘密이 아닌 要約 또는 資料要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添附한 資料要約 불가능의 陳述書 및 秘密로 제출한 자료를 行政當局이 保全命令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陳述書 또는 行政保全命令으로 당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陳述書를 제출하는 각 경우에는 자료의 秘密을 유지 받을 수 있

70) Dicky, *op. cit.*, p.499.

71) 高田昇治, 前掲書, p.157.

72) Dicky, *op. cit.*, p.499.

기 때문에 反덤핑法 第777條 (b)項을 熟知할 필요가 있다.

(4) 去來水準의 差異에 대한 調整

反덤핑 規則에 의하면 價格의 비교는 同一한 또는 가장 類似한 流通經路의 수준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에 相應하는 調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³⁾

流通經路의 水準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購買者의 종류와 物品購買數量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거의 대부분의 國內市場販賣는 最終消費者에 대한 것인데 반대로 대부분의 美國市場販賣는 都賣業者에 대한 것이라면 流通經路가 相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國內市場에는 割引價格으로 판매하고 美國市場에는 割引되지 않은 價格으로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割引價格을 國內市場價格에 加減함으로써 두 流通經路의 差異가 調整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의를 요할 점은 同一한 調整項目이 중복되어 調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컨대 數量割引이 적용된 경우라면 流通經路의 差異調整에서 그와 相應되는 割引이 調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流通經路의 차이와 관련된 諸販賣費用이 調整되었다면 販賣環境의 차이에 따른 費用調整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生產原價以下の 販賣에 대한 特例

1979年 通商法은 종전의 1921年 反덤핑法을 改正하여 生產原價以下の 販賣⁷⁴⁾와 國家統制經濟國(State-controlled economy country)으로부터의 輸入⁷⁵⁾ 및 多國籍企業으로부터의 輸入⁷⁶⁾의 경우에 있어서는 外國市場價格을 算定함에 있어서 전술한 算定方法과는 다른 特則을導入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를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73) 19 C.F.R. § 353. 19.

74) 773 (b), 19 C.F.R. § 353. 7.

75) 773 (c), 19 C.F.R. § 353. 8.

76) 773 (d), 19 C.F.R. § 353. 9.

(1) 生產原價以下로 販賣된 경우의 外國市場價格

理論的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컨대 輸出國 또는 第3國에서의 高價格販賣政策에 의하여 獲得한 利益을 美國市場에 덤플링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輸出國 또는 第3國에서 生產原價以下의 가격에 의하여 판매가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일반적인 外國市場價格의 算定方法에 의하면 코스트를 下廻하는 이러한 가격에 의하여 外國市場價格이 算出되기 때문에 “公正價格以下”的 판매가 否認될 가능성성이 크게 될 것이다.⁷⁷⁾

그리하여 反dumping法은 輸出國에서 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가격이 生產 코스트를 下廻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合理的인理由(reasonable grounds)가 있는 경우에는 生產 코스트를 下廻하는 가격으로서의 판매를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散發的인 덤플링(sporadic dumping)⁷⁹⁾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附加시키고 있다. 즉, 生產 코스트를 下廻하는 가격으로서의 販賣가 長期에 걸치며 數量이 實質的인(substantial quantities) 것이거나, 一般的인 거래과정에서 상당한 기간내에 모든費用을 回收하는 것이 불가능한 價格이라고 判斷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陣腐化한 물품을 生產 코스트 이하의 가격으로 販賣한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去來慣行이며 또한 航空機와 같이 研究·開發에 막대한 비용이 投入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짧은 기간에 同研究·開發費를 回收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附加되고 있는 것 같다.⁸⁰⁾ 그리하여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生產 코스트 이하인 價格

77) 高田昇治, 前掲書, p.158.

78) 773 (b), 19 C.F.R. § 353. 7 (a).

79) 保護主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論者들도 이러한 散發的, 偶然的인 덤플링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Viner. J., *op. cit.*, p.315).

80) Dicky, *op. cit.*, p.501.

으로서의 販賣를 제외한 나머지의 販賣를 기초로 하여 外國市場價格을 算出하고 있으나 殘餘의 販賣가 外國市場價格의 기초로서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면 후술하는 構成價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⁸¹⁾

그리고 여기서의 生產 코스트는 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을 生產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材料費, 勞動 코스트 및 一般管理費(general expenses)에 관한 利用可能한 最善의 資料(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에 의하여 算定된다.⁸²⁾

美國의 製造業者에 의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資料가 제출되면 立證責任은 輸入業者에게 있고, 輸入業者は 生產 코스트에 관한 資料를 提出함으로써 生產 코스트를 下廻하는 가격으로서의 販賣가 아니라는 趣旨의 증명을 하여야만 한다.⁸³⁾

그런데 이 규정은 그 適用의 基準이 매우 不明確하다는 批判을 면 할 수 없다.⁸⁴⁾ 왜냐하면 生產 코스트를 下廻하는 가격으로서의 販賣를 제외한 나머지의 판매가 外國市場價格을 算出하는 기초로서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한 判斷은 너무나豫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칫 이를 판단하는 機關인 商務省에大幅의인 裁量權을 인정하는 결과를招來하고 말기 때문이다.

(2) 國家統制經濟國으로부터의 輸入의 경우

國家統制經濟國에 있어서의 國內價格은 항상 生產 코스트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 輸出價格은 外貨의 獲得 등을 위하여 政府가立案한 特定의 목적에 의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外國市場價格을 算出하기 위한 基準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당해 輸出國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또는 第3國에의 同一하거나 類似한 물품의 販賣 또는 販賣申請이 되고 있는 가격이 이것에 의하여 外國市場價格을 算出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輸出國의 經

81) 773 (b), 19 C.F.R. § 353. 7 (b).

82) 19 C.F.R. § 353. 7 (b).

83) *Ibid.*, p.500.

84) *Ibid.*, p.501.

濟가 國家의 統制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⁸⁵⁾ 첫째, 비교되는 非國家統制經濟國에 있어서의 類似物品이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消費品으로 販賣된 가격 또는 美國을 포함한 기타 國家에의 輸出價格 그리고 둘째, 非國家統制經濟國에 있어서의 構成價格의 각각에 반영된 일반적인 코스트, 經費 및 利潤에 의하여 外國市場價格이 결정된다.⁸⁶⁾

(3) 多國籍企業으로부터의 輸入의 경우

대체로 덤픽을 행하는 경우로는 輸出國內市場에서 제조된 물품에 높은 價格을 설정하여 販賣하고 그 결과에 따라 獲得한 이익을 가지고 外國市場에 低價販賣하는 것이지만 多國籍企業의 경우에는 第3國에서 만들어진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의 販賣에 의하여 얻는 이익으로써 外國市場에 덤픽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美國의 反dumping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外國市場價格을 결정함에 있어서 第3國에서 당해 多國籍企業에 의하여 製造된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으로서 실질적인 數量으로 販賣되고 있는 그 外國市場價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다만 이를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輸出國의 企業과 第3國의 企業間に 直接 또는 間接을 不問하고 所有 또는 支配하는 관계가 존재할 것, 둘째, 輸出國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關聯會社에 의한 소비를 위하여 판매된同一 또는 類似한物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美國으로의 輸出과 비교하는 데에는 量的으로 충분하지 아니할 것, 셋째, 輸出國外에서 제조된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의 外國市場價格이 輸出日에 있어서 生產된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의 그것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특히 세번째 要件에 있어서의 外國市場價格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生產原價의 차이에 대한 調整이 필요하다.⁸⁸⁾ 그런데 두번째의 요건에

85) 이러한 경우에는 利用可能한 最善의 資料에 基礎하여 決定(determination to be made on best information available)한다(776 (b), 19 C.F.R. § 353. 8 (a)).

86) 773 (c), 19 C.F.R. § 353. 8 (a).

87) 773 (d).

대하여서는 多國籍企業은 第3國에서 製造된 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販賣함으로써 얻은 利益을 가지고 美國에의 輸出뿐만 아니라 輸出國內市場에서의 販賣에도 덤핑할 가능성을 看過할 결함이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⁸⁹⁾

위 두번째의 요건에 대한 不存在, 즉 輸出國內市場에서도 美國으로의 輸出價格과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量의 同一 또는 類似한 물품의 販賣가 있는 경우에는 商務省은 일반원칙에 따라 輸出國의 國內市場價格 또는 第3國에의 수출가격에 의하여 얻어지는 外國市場價格과 美國에의 輸出價格에 의하여 얻어지는 美國價格과를 비교하여 公正價格以下 販賣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多國籍企業은 美國에의 輸出과 같이 輸出國內市場에서 덤핑을 함으로써 용이하게 同規定을 避開하여 美國에서 反dumping 關稅의 부과를 免할 수도 있다.⁹⁰⁾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위 두번째의 要件은 비합리적이다.

IV. 構成價格의 適用 및 算定方法

어떤 물품이 輸出國의 國內市場에서 販賣가 전혀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여도 少量이거나 生產原價以下の 판매로 인하여 이에 의한 國內市場價格이 美國價格과 비교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第3國으로서 輸出價格 또는 이에 같음하여 이를 바 構成價格 (constructed value)을 사용할 수도 있다.

88) 773 (d): 輸出國外部에서 생산된 當該物品 또는 이와 類似한 물품의 外國市場價格을 결정함에 있어서 行政當局은 輸出國으로부터의 輸出時點에서 同價格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諸般容器 및 包裝費用과 물품을 미국으로 船積할 수 있는 狀態로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타 모든 原價, 手數料 및 費用에 대하여는 輸出國內에서의 그와 같은 비용을 참조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89) Dicky, *op. cit.*, p.937.

90) *Ibid.*, p.938.

1921年 反덤핑法下에 있어서는 美國價格에 비교되는 가격의 適用優先順位가 國內市場價格→ 第3國輸出價格→ 構成價格의 順位였으나 1979年 通商協定法에서는 國內市場價格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第3國輸出價格과 構成價格 중 商務省의 裁量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다.⁹¹⁾

다만 反덤핑 規則은 적절한 자료가 이용하기에 可能하고 所定의 期間內에 그 자료에 대한 檢證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第3國輸出價格을 構成價格보다 優先시키고 있다.⁹²⁾ 또한 構成價格은 輸出國이 國家統制經濟國인 때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⁹³⁾을 밝혀둔다.

한편 1930年 關稅法 第773條 (e)項에 의하면 構成價格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合算하여 결정한다.

첫째, 材料費(輸出國에서 材料에 직접 부과된 內國稅로서 免除 또는 還給되는 것을 제외함) 및 同一 또는 類似한 物品의 제조에 일 반적 으로 요하는 製造費(fabrication) 또는 기타 加工費(processing cost). 둘째, 輸出國의 生產者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과 同一한 等級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을 일 반적인 都賣數量으로 그리고 일 반적인 去來過程에서 販賣하는 경우에 一般經費(다만 위 첫째 費用의 10% 以上) 및 利潤(다만 上記 첫째 및 둘째 비용에 대한 一般經費의 8% 以上). 셋째, 美國으로의 輸出準備를 위한 諸費用, 즉 容器, 包裝 기타 일체의 費用.⁹⁴⁾

따라서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번째의 費用은 製造原價(manufacturing cost)이며 두번째 一般費用은 一般管理販賣費(General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 G.S. & A)이므로, 결국 構成價格은 生產原價(Cost of Production: COP)⁹⁵⁾ + 利潤(profit)의 算式에

91) 773 (a) (2).

92) 19 C.F.R. § 353. 4 (b).

93) 773 (c), 19 C.F.R. § 353. 8 (a) 本文 참조.

94) 773 (e) (1), 19 C.F.R. § 353. 6 (a).

95) 反덤핑에서 사용되는 COP는 當該物品의 製造 및 販賣에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變動費와 固定費 배부액을 포함한 總原價概念을 말한다. 따라서 反덤핑 調査에서의 COP는 販賣費·一般管理費 등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 企業會計基準上의 製造原價(manufacturing cost)개념과는 다

따라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合計額은 工場渡價格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構成價格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타 가격과는 달리 별도의 調整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構成價格은 당해 調查對象物品에 대한 外國製造業者의 製造原價에 관한 경험이 의하여 算定되는 것이기 때문에⁹⁶⁾ 이러한 자료는 당해 外國製造業者에 의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外國製造業者가 營業上의 秘密을 이유로 하여 관련 자료의 提示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商務省은入手可能한 最善의 資料(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⁹⁷⁾ 또한 構成價格의 算定에 대한 資料의 수집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는 直·間接을 불문하고 이를 무시한다.⁹⁸⁾ 그 까닭은 이러한 거래는一般的인公正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市場價格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商務省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없는 當事者間의 거래에 관한入手可能한 最善의 證據(the best evidence available)에 의하여 構成價格을 算定한다.

여기서의入手可能한 最善의 證據로는 輸出國의 다른 企業이公表한 會計報告書(published accounting report) 또는 生產 코스트 등이

르다. 즉, COP는 製造原價에 販賣費, 一般管理費를 加算한 金額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一般管理費에는 利子費用 등의 營業外費用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 Vol. 45, No. 26(Wednesday, February 6, 1980), *Rules and Regulations*, "Anti-dumping Request for Information" II, 'Cost of Production' 참조).

96) 이 점은 輸出國이 國家統制經濟國임을 이유로 構成價格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773 (c), 19 C.F.R. § 353. 8 (a) 本文 참조).

97) 776 (b);前述註 92) 참조.

98) 19 C.F.R. § 353. 6 (b). 여기서의 특별한 관계자란, i) 兄弟, 자매(兩親 모두 親父母인지 또는 어느 한쪽이 義父(母)인지를 불문), 配偶者, 直系尊屬을 포함하여 家族의構成員들, ii) 組織의職員 또는長 및 同組織體 iii) 同業者들, iv) 雇傭主와 被雇傭人, v) 어떤 組織의議決權이 있는 公募株 또는 持分總額의 5% 이상을 直·間接으로 所有·管理하거나 議決權이 함께 소지하고 있는 자와 同組織, vi) 어떤 자를 直·間接으로 管理를 받거나 또는 어떤 자와 管理權을 共有하고 있는 2人以上的 자들을 말한다(773 (e) (3) 참조).

포함되며, 특히 美國製造業者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가 活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⁹⁹⁾ 따라서 入手可能한 最善의 證據法則 때문에 자료의 提出時에는 迅速하고도 正確한 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結論

美國의 反덤핑法에 대한 最善의 方案은 무엇보다 이 法律이 추구하는 목적, 즉 價格으로부터의 回遊를 통하여 우선 이 法律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本研究의 第4章에서 詳細하게 분석되고 있는 價格構造에 관한 基本構造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輸出價格의 決定에 있어서 주의할 比較對象이 되는 두 개의 價格 중 購買價格(Purchase Price: PP)이 基準價格으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輸出業者販賣價格(Exporter's Sales Price: ESP)이 基準價格으로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同一한 原理로서 비교대상이 되는 外國市場價格(Foreign Market Value: FMV)도 國內市場價格(Home Market Price: HMP)뿐만 아니라 第3國輸出價格(third country export price)이나 構成價格(constructed value)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輸出價格을 點檢할 때에는 위 對比價格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이른 바 輸出價格 \geq 公正價格이 유지되도록 결정함으로써 反덤핑法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留意하여야 할 사항은 輸出價格 및 外國市場價格은 모두 선정된 基準價格에 일정한 加算 및 控除를 행하여 調整하고 마지막으로 工場渡價格(exfactory price)을 算出하기 때문에 각 事例別 價格調整方式에 따라 사전에 검토한 다음 輸出價格이 國內市場價格보다 下廻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99) Dicky, *op. cit.*, p.933.

다시 말해서 輸出業者는 新規商品을 수출하기 전에 市場狀況, 原價要素, 競爭者의 價格 등 市場條件은 물론 당해 수출물품이 反덤핑 提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고려하여 特定品種, 品質의 상품을 수출할 때 反덤핑法에 의한 公正價格 이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試算·確認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內需市場價格 + 包裝費用 - 輸出國內運送費用 및 保險料 등 - 數量割引 및 기타 割引 - 기타 費用 ± 기타의 調整分(物理的形態의 차이, 流通經路의 차이, 販賣環境의 차이)”의 算式에 따라 調整後 內需市場價格을 算出해 보아야 한다.

둘째, “PP 輸出價格 + 包裝費用 + 相計關稅 등 - 諸割引 - 海上運送費 등 - 販賣手數料 - 기타 費用”의 算式에 따라 調整後 PP 輸出價格을 算出해 보아야 한다.

셋째, “ESP 輸出價格 + 包裝費用 + 相計關稅 등 - 諸割引 - 海上運送費 등 - 美國內輸送費用 - 販賣手數料 - 關聯販賣會社費用 - 輸出後增分價值 - 기타 費用”의 算式에 따라 調整後 ESP 輸出價格이 얼마나 되는지를 算出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덤픽이 提訴된 후에 輸出價格 중 어느 것이 사용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하며, 아울러 비교의 대상이 되는 外國市場價格도 內需市場價格뿐만 아니라 第3國販賣價格 혹은 構成價格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列舉된 調整項目들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각 事例別 상황과 法規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어떻든 위와 같은 算式을 활용하여 모든 가격을 調整하고 상호 비교한 다음 그 결과를 輸出價格決定의 중요한 요소로 이용함으로써 反덤핑法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덤픽 마진을 算出할 때 負(-)의 덤픽 마진은 計算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輸出物品 중 하나는 價格이 높고 다른 하나는 낮다고 하더라

도 높은 물품의 가격이 낮은 물품의 덤플링效果를 相計시키지 않는다 는 사실에 留意하여 가능한 한 가격이 평준화(averaging the price)가 되도록 輸出價格을 決定하여야 한다.

同種 및 類似產業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過當競爭 共同自救策의 일환으로 自國市場에서는 人爲的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협의를 행한다든가 반대로 美國으로 輸出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談合한 경우에는 1916年 反dumping法 및 1894年 월슨 關稅法과 관련 反트러스트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價格決定의 延長으로서 輸出企業 상호간에 過當競爭을 止揚하고 協助的인 수출분위기를 조성하며 一貫된 輸出價格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공동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推定할 만한 證據가 있어서는 안된다.

參考文獻

- 三宅正太郎, 貿易摩擦とガット, 日本關稅協會, 1985.
- 山原恒夫, アツア諸國との貿易問題, 日本關稅協會, 1982.
- 小倉和夫, 日本經濟摩擦, 日本經濟新聞社, 1983.
- 小田正雄, 貿易摩擦と輸出規制, 日本關稅協會, 1983.
- 松下滿雄, 歐美の輸入制限法制, 同文館, 1973.
- , 日本通商摩擦の法的問題, 日本關稅協會, 1980.
- 阿部清司, “GATTの機能と役割變化”, 『國際問題』, 1983. 5.
- 野崎正剛, 東京ラウンドの全貌, 日本關稅協會, 1980.
- 野津高次郎, 米國稅制發達史, 有斐閣, 1975.
- 朝倉弘教, 世界關稅史, 日本關稅協會, 1983.
- 日本貿易振興會, 米國の79年通商協定法, 日本貿易振興會, 1980.

- , “1921年アンチ・ダンピング法の運用上の諸問題”, 『會計監査院報告書』, 日本貿易振興會, 1979.
- , 米國のアンチ・ダンピング法規の解釋と運用の實際, 日本貿易振興會, 1972.
- Anderson, G.H. and Humpage, C.F., “A Basic Analysis of the New Protectionism”, *Economic Impact*, 1983. 1.
- Agege, C.O., “Dumping of Dangerous American Products Overseas: Should Congress Sit and Watch?”,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 19, No. 4, 1985.
- ABA, “Anti-trust Section Ad Hoc Common Anti-trust and Anti-dumping Report of the Ad Hoc Subcomm, on Anti-trust and Anti-dumping”, 1973. *Appended to 43 Anti-trust L.J.* 653, 1975.
- Baldwin, R.E., “Beyond the Tokyo Round Negotiation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79.
- , “The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s: Toward Greater liberalization?”,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9.
- Barshefsky, C., Atkeson, T. and Cunningham, R.O., “A Guide to Major United States Import Relief and International Trade Law”, *Korean Traders Association*, 1983.
- Brock, W.E., “Priority Trade Issues of the 1980s”, *Economic Impact*, 1982. 2.
- Brownlie, I.,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66.
- Cohen, S.D., *The Marketing of U.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77.